



제429회 국회 (정기회)
제5차 국회운영위원회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법관 등에 대한 출석 요구 제한〉

■ 김민전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3442호)

2025. 11.

국회 운영 위원회

수석전문위원 김상수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3

I. 제안경위

1. 발 의 자 : 김민전 · 권성동 · 김상훈 · 서지영 · 서천호 · 조정훈
김대식 · 박충권 · 조배숙 · 박상웅 · 유용원 · 김용태
정성국 · 최수진 의원(14인)

2. 제 안 일 : 2025. 10. 1.

3. 회 부 일 : 2025. 10. 2.

※ 의안번호 : 13442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본회의나 위원회는 그 의결로 안건의 심의 또는 국정감사나 국정조사를 위하여 증인, 감정인 또는 참고인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음.

그런데 형사재판이나 수사가 진행 중인 사안에 대하여 담당 법관이나 검사, 사법경찰관리를 국회에 출석 요구한다면 입법부인 국회가 사법부인 법관이나 행정부인 검사·사법경찰관리의 사건 처리에 부당한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안건이나 국정감사 또는 국정조사와 관련하여 진행 중인 형사재판 또는 수사를 담당하고 있거나 담당하였던 법관·검사 또는 사법

경찰관리에 대해서는 출석을 요구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우리 헌법이
보장하는 3권분립을 형사재판이나 수사에서 보다 명확히 하려는 것임
(안 제129조제1항 단서 신설).

Ⅲ. 검토의견

개정안은 안건의 심의나 국정감사 또는 국정조사와 관련하여 진행 중인 형사재판 또는 수사를 담당하고 있거나 담당하였던 법관·검사 또는 사법경찰관리에 대해서는 본회의나 위원회가 증인 등으로 출석을 요구할 수 없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29조제1항 단서 신설).

[표-1] 개정안 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129조(증인·감정인 또는 참고인의 출석 요구) ① 본회의나 위원회는 그 의결로 안건의 심의 또는 국정감사나 국정조사를 위하여 증인, 감정인 또는 참고인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 <단서 신설>	제129조(증인·감정인 또는 참고인의 출석 요구) ① ----- ----- ----- ----- ----. 다만, 해당 안건이나 국정감사 또는 국정조사와 관련하여 진행 중인 형사재판 또는 수사를 담당하고 있거나 담당하였던 법관·검사 또는 사법경찰관리에 대해서는 출석을 요구할 수 없다.
②·③ (생략)	②·③ (현행과 같음)

현행 「국회법」 제129조¹⁾는 본회의나 위원회는 그 의결로 안건의 심의 또는 국정감사나 국정조사를 위하여 증인, 감정인 또는 참고인의

1) 「국회법」 제129조(증인·감정인 또는 참고인의 출석 요구) ① 본회의나 위원회는 그 의결로 안건의 심의 또는 국정감사나 국정조사를 위하여 증인, 감정인 또는 참고인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위원회가 제1항의 요구를 할 때에는 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증인·감정 등에 관한 절차는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증인, 감정인 또는 참고인의 출석을 요구하는 목적에 대해서는 ‘안전의 심의 또는 국정감사나 국정조사를 위하여’라고 명시하고 있으나, 출석 요구 대상이 되는 증인, 감정인 또는 참고인의 범위에 대해서는 명시하고 있지 않음.

현행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은 증인이 선서·증언 또는 서류등의 제출을 거부할 수 있는 경우와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사람의 직무상 비밀에 관한 증언 거부와 그 절차에 관하여 규정²⁾하고 있으나, 「국회법」과 마찬가지로 출석 요구 대상이 되는 증인, 감정인 또는 참고인의 범위에 대해서는 명시하고 있지 않음.

한편,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8조³⁾는 국정감사 또는 국정조사는 계속 중인 재판 또는 수사 중인 사건의 소추에 관여할 목적으로 행사되어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는 입법취지상 국회가 독자적인 진실규명, 정치적 책임추궁, 의정자료 수집 등의 목적으로 적법한 절차에 따라 국정감사 및 국정조사를 진행한다면, 같은 사건에 대하여 재판이 진행되고 있다고

2)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증언 등의 거부) ① 증인은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에 해당하는 경우에 선서·증언 또는 서류등의 제출을 거부할 수 있다.

② 감정인은 「형사소송법」 제148조에 해당하는 경우에 선서 또는 감정을 거부할 수 있다.

제4조(공무상 비밀에 관한 증언·서류등의 제출) ① 국회로부터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사람이 증언의 요구를 받거나, 국가기관이 서류등의 제출을 요구받은 경우에 증언할 사실이나 제출할 서류등의 내용이 직무상 비밀에 속한다는 이유로 증언이나 서류등의 제출을 거부할 수 없다. 다만, 군사·외교·대북 관계의 국가기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그 발표로 말미암아 국가안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이 명백하다고 주무부장관(대통령 및 국무총리의 소속기관에서는 해당 관서의 장)이 증언 등의 요구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소명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8조(감사 또는 조사의 한계) 감사 또는 조사는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거나 계속 중인 재판 또는 수사 중인 사건의 소추(訴追)에 관여할 목적으로 행사되어서는 아니 된다.

하더라도 국정감사 및 국정조사의 대상이 될 수 있고, 일반적인 수사
· 공소 업무 역시 국정감사 및 국정조사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해석
되고 있음.⁴⁾

개정안은 형사재판이나 수사가 진행 중인 사건에 대하여 담당 법관
·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리를 증인 등으로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 출석
을 요구하게 된다면 사법부 소속인 법관의 재판 수행이나 행정부 소
속인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리의 사건 처리에 부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인식하에, 진행 중인 형사재판 또는 수사를 현재 담당하고 있
거나 과거 담당하였던 법관·검사 또는 사법경찰관리에 대해서는 증
인 등으로 출석을 요구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형사재판 또는 수사에
있어 헌법상 보장되는 권력분립의 원칙을 명확히 하려는 취지로 이해
됨.

개정안에 대해서는, 진행 중인 형사재판 또는 수사를 담당하고 있거
나 담당하였다는 사실만으로 법관·검사 또는 사법경찰관리 등 특정
직위를 출석 요구 대상에서 원천적으로 제외하는 경우 국회의 증인
등 출석 요구 제도의 실효성이 저해될 소지가 있는 점,⁵⁾ 권력분립의
원칙상 국정감사 및 국정조사의 한계에 대한 해석에 있어서 적법한
절차에 따라 국정감사 및 국정조사가 진행된다면 계속 중인 재판이나

4) 다만, 소송이 계속 중인 사건의 재판 내용과 관련되거나 법관의 소송지휘·재판절차를 대상으로 하
는 국정감사 및 국정조사는 인정될 수 없고, 현재 진행 중인 수사를 방해하거나 소추에 간섭하는 국
정감사 및 국정조사는 수사·공소 업무의 공정을 기하기 위하여 허용되지 아니함(국회사무처, 「국
회법해설」, 2024, pp.753~754).

5) 참고로, 형사재판 또는 수사 등 특정 사안에 대하여 증인 등의 거부를 허용하는 방안이 특정 직위를
출석 요구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보다 증인 등 출석 요구 제도의 실효성 측면에서 바람직해 보임.

수사 중인 사건도 국정감사 및 국정조사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해석되는 점⁶⁾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할 사안으로 보임.

문 의 처

02)6788-5017

6) 국회사무처, 「국회법해설」, 2024, pp.753~754